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임승규 전)유신고등학교장(2022~2025), 현)유신고등학교 교사	단체명	개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216 (우만동 산71) 유신고등학교		
	전화번호	031-547-4528	휴대전화번호	010-3750-7422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제8조 4항 제11조 4항 '학교법인·사학재 정(사립인사포함) 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바랍니다] *의견 내용* 각 조 남부행정국 북부행정국 내의 4항 '학교 법인·사학재정(사립인사포함)에 관한 사항' 담 당 조직을 '행정분과, 교육분과'로 이원화 제안 *그 이유* 경기교육에서 사학(특히 고등학교)이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적 의미는 그 규모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지대하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 조직 은 행정전문가 서기관 1인을 과장으로 하는 '행 정중심 1원화' 조직인 관계로, 법인의 학생, 학 부모, 교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사학의 학교운영 특성상, 민주적 법인운영과 교육적 효 율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립학교법'을 '행정분과(서기 관급 제1과장), 교육분과(장학관급 제2과장)'으 로하는 '행정/교육 2원화 체제'로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신설되는 '사립학교법 교육분과'는 장학관을 제 2과장으로 구성하여 1.민주적 사학운영의 평가; 2.학교법인 이사진 실무 연수; 3.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예산 차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 그 리고 교직원들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다. 또한, 절대다수의 사학 은 재정보조를 받는 학교로서 사실상 '공립학교' 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현행 '준법중심 행 정관리체제'로 인하여 '불법적 운영이 아닌 경 우'라면 비교육적 이사회운영 및 교육활동이 발 생하더라도 그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똑같이 세금을 내며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학의 학생 학 부모, 특히 절대다수의 '평준화지역 사학교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단 0.1%라도 교육적 불 이익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여건이 되고 있다. 사학의 학생들이 단지 사학에 배정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심각한 교육적 불평등(예, 학교법인		수정의견

		이사회 의사결정의 영향; 소극적인 교육환경개선 노력; 학생중심 학교장의 평가절하 등)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교육적 불평등은 경기도의 여러 사학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남부/북부행정국 산하 '사립학교과'를 '교육분과' 신설을 통한 '행정/교육 2원화 체제'로 개편하여 사학/공립 구분없이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제언한다.	
--	--	--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제출자: 성명 임승규



경기도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 귀하

[별첨] 2027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선 제안서

[별첨]

2027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선 제안서

“사학의 아이들도 좋은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내재적 취약점으로 인하여 일부 사학의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학의 아이들도 좋은 교육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학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경기사학에서 32년째 근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서비스 보장’이 경기사학에서도 이루어져 사학이 경기교육의 짐이 되지 않고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마음으로 2027년 행정조직개편의 ‘제8조4항, 제11조4항’에 대한 조직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제안자	
성명	임 승 규
경력	• 현) 유신고등학교 교사 • 전) 유신고등학교장(2022~2025) • 중국 남경대학교 언어학박사(2006)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 위원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 교과별 전문가위원회 위원 • 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 상임부대표 •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2010~2019) • 2018중등교원임용시험 검토위원 • 제7차/2009개정/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집필

1

들어가기

가

제안 배경

사립학교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립학교가 행정적 안정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사립학교는 건학이념과 학교 전통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학은 입시지도, 생활지도, 진로진학 프로그램, 동문 네트워크, 장기근속 교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의 다양성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사학의 자율성이 곧바로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율성은 책임성과 결합될 때 공교육적 가치가 된다. 사학의 자율성이 법인 중심 운영, 폐쇄적 인사, 이사회 전횡, 교원 채용비리, 학사운영 개입 등으로 왜곡될 경우, 사립학교는 교육적 장점을 잃고 사적 지배구조의 부작용을 드러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언론과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립학교 관련 사건들은 이 문제를 보여준다. 경기도 내 일부 사학에서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채용자료 파기 의혹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임원이 학교장의 학사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도 확인된다.¹⁾

이러한 사례는 사학 운영의 핵심 문제가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채용비리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법인과 이사회가 학교의 교육활동 영역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²⁾

경기도 사학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비리 발생 후 감사와 징계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학이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주무부서인 ‘**사립학교과**’의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서기관급 1인 과장 체제**로는 행정중심 즉, ‘사학의 준법성 중심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학도 교육기관이므로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중심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교육 2원화 체제**’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즉, **서기관급 제1과장은 행정분야 책임자로, 장학관급 제2과장은 교육분야 책임자로의 2원화 조**

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7201171311> “1억 내면 정교사 채용”…18억 챙긴 태광학원 채용비리 철폐

2)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2129900004> “감 뇌라 배 뇌라” 학사운영 수시개입 사립교 이사 퇴출

직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다.

나 제안의 기본 방향

본 제안서는 사학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경기 사학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사학의 자율성은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전문성,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공교육의 공공성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제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과 2원화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학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학교법인 이사회의 인사권은 인정하되, 그 권한의 행사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객관적 평가와 민주적 절차가 되도록 사립학교과 교육분야 책임자가 관리한다.

셋째, 교육청의 역할을 사후 감사 중심에서 사전 지원·예방·교육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한다.

넷째, 학생안전 관련 필수 예산을 제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예산지원 여부는 사학운영의 민주성·책임성·교육성 평가와 연계한다.

다섯째, 최종 목표는 법인 통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학 교육경쟁력의 회복이다.

2

사학 관련 현황

가

경기 사학의 분포

경기도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비중이 높지만, 지역별로 공립과 사립의 분포 차이가 크다. 신도시와 택지개발 지역은 공립학교 신설이 많아 공립 비중이 높고, 수원·안양·부천·평택 등 전통 도시권은 역사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포천·연천·가평·양평 등 농어촌 및 외곽 지역은 공립 중심 구조가 뚜렷하다.³⁾

이러한 분포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학 운영의 질이 지역 고등학교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반대로 공립 중심 지역에서는 사학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소수 사립학교가 지역 내 특수한 교육 수요를 담당하는 경우 그 영향력은 작지 않다.

경기 사학의 분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	해당 지역 예시	특징	정책적 의미
전통 사학 밀집형	수원, 안양, 부천, 평택 등	오래된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존재함	법인 운영 투명성, 학교장 인사 공정성 강화 필요
신도시 공립 우세형	화성, 김포, 파주, 하남 등	공립 신설학교 비중이 높음	사학은 특색교육 모델로 경쟁력 확보 필요
농어촌 공립 중심형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등	공립학교 중심, 사립학교 수 제한적	소수 사학의 공공성·지역책임성 중요
혼합형	성남, 고양, 용인, 광명 등	공립과 사립이 혼재함	학교 간 교육력 격차 관리 필요

경기 사학의 분포를 단순히 공립 대 사립의 수치로만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사학을 어떤 교육기관으로 경험하는가

3) https://data.edmgr.kr/dataView.do?id=data-gg-go-kr_1co945iciyjn0zyspr0f21083003

이다. 사학이 건학이념과 교육과정 특색을 살려 학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면 공교육의 다양성은 높아진다. 반면 법인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지속된다면 사학은 지역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 사학정책은 사립학교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분포와 사학의 교육적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교장 리더십, 교원 조직문화,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이 학교 경쟁력의 핵심이므로, 사학정책 또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 사학의 사고 사례 분석

최근 사립학교 관련 사고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원 채용비리이다.

평택 지역 태광학원 사건에서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가 보도되었다. 이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투명한 검증절차 없이 운영될 경우 얼마나 심각한 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⁴⁾

둘째, 채용자료 파기와 감사 회피 의혹이다.

성남 지역 사립학교에서는 정규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보존기간 이전에 파기되어 경기도교육청이 관련자를 고발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채용자료 보존은 채용의 공정성을 사후 검증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이러한 자료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 행정미비가 아니라 채용 절차의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이다.⁵⁾

셋째, 학교법인 또는 이사회의 학사개입 문제이다.

학교법인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학교 등교시간, 담임교사 출근 시간, 학사일정,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보고, 심지어 운동장 농구대의 그물 교체 여부 등 학교장 권한 영역에 법인 임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학사개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⁶⁾

4)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7201171311> “1억 내면 정교사 채용”…18억 챙긴 태광학원 채용비리 철퇴

5)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0560000060> 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성남 사립학교 5명 고발

6)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21299000004> “감 나라 배 나라” 학사운영 수시개입 사립교 이사 퇴출

넷째, 학교장 인사의 불투명성 문제이다.

교장 임명이나 중임이 법인의 신뢰 또는 관계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학교 교육성과와 구성원 신뢰도는 부차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장이 법인의 의중에 과도하게 종속될 경우, 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지도자라기보다 법인의 관리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자율성, 학교 민주주의,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약화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진로지도, 대학입시, 예비사회인 자질 배양 등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만큼 **고등학교 교장의 학생을 잘 육성하기 위한 교육관과 교육정책 실천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다. 그러므로 사학에서의 교장의 임명 및 중임 결정 시에 이러한 교육적 역량과 그 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사학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인사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원 채용비리도, 학교장 임명 문제도, 학사개입도 결국 학교법인과 이사회가 가진 권한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학 사고의 예방은 단순히 감사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권한 행사 과정에 사전적 기준, 객관적 자료, 교육공동체 참여, 교육청의 교육전문적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학교장 임용과 중임은 사학 교육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별도의 표준 심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사학의 민주성 저하 원인

가

사립학교법의 한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학교장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재산관리, 정관 변경, 임원 임면, 학교장 및 교원 임면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사립학교 학교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중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⁷⁾

이 규정은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법인의 경영책임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장 임명권을 갖는 것은 법 체계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학교장 임명권의 존재와 임기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권을 어떤 교육적 기준으로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법은 “누가 임명하는가”와 “몇 년 임기로 임명하는가”는 정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임명해야 하는가”, “중임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교육성과와 공동체 평가를 반영해야 하는가”, “이사회 판단이 교육적으로 부당할 때 어떤 절차로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백이 크다.

이 공백은 학교장 인사의 폐쇄성을 낳을 수 있다. 학교장 인사는 한 학교의 교육방향, 교직원 조직문화, 학생 생활교육, 진로진학 전략, 학부모 신뢰도, 지역사회 협력 수준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학교장 임용 또는 중임 심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학교경영 성과, 교육과정 운영 능력, 학생중심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학의 교육경쟁력은 법인 내부의 인사 판단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특히 학교장이 법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 또는 중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면,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판단보다 법인과 이사회에 대한 순응을 우선시하게 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이 학교장 중임 제한을 둔 취지 중 하나도 장기간 재임을 통한 법인과의 유착, 학교장 종속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중임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7)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따라서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법 자체가 이사회 권한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학생중심 교육성과와 교육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세 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

나 사학 정관의 한계

사립학교 정관은 학교법인의 기본 운영규범이다. 그러나 많은 사학 정관은 학교장 임용과 중임에 관하여 매우 간략한 규정만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형식상 법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교육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임명 및 중임 심사 기준이 없다.

학교장을 임명 및 중임 심사 진행 시, 필요한 교육철학, 학교경영능력, 교육과정 운영 역량, 학생 생활지도 역량, 교직원 민주적 리더십, 학부모 소통 능력, 법령 준수 의식 등이 정관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

학교장은 법인의 관리자가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의 총괄 책임자이다. 그런데 학교 장 중임을 결정하면서 실제 학교생활을 함께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공식자 료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교장 인사는 교육현장과 분리된 법인 내부 판단으로 흐를 수 있다.

셋째, 심사자료 보존과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

학교장 임용과 중임 심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었으 며, 어떤 절차로 이사회가 의결했는지에 대한 기록과 설명이 부족하면, 인사의 공정성 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넷째,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약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장 인사는 최소한의 공공적 심사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관의 한계는 사학 교육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학교장은 학생중심 교육혁

신을 추진하기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교사들은 학교 운영의 방향성보다 법인 내부 권력관계에 민감해진다. 결국 학교교육의 중심이 학생에서 법인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사학 정관은 단순히 법적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문서가 아니라, **학생중심 학교운동을 보장하는 자치규범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학교장 임용과 중임에 관한 표준 정관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이를 권고하며, 이행 여부를 사학 평가와 예산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조직 개편 제안 - 사립학교과 2원화

[제안]

도교육청 사립학교과 2원화 운영체제 개편

가

현행 체제의 제한점

경기도교육청의 사학 관련 업무는 학교법인, 사학재정, 인사, 시설지원 등 행정 중심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립학교의 예산, 재산, 법인 운영, 시설사업, 인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활동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⁸⁾

그러나 행정 중심 관리만으로는 사학의 정성적 교육실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학교장 역량 및 교육철학; 교직원 민주성 확보여부; 법인이 학사개입 실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 학교 교육력이 실제로 향상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학 담당부서는 규정준수 여부와 민주적 학생중심 교육 실천의 정량/정성 양면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립학교과는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학교와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의 적법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육적 가치의 실천 상황은 선제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나

사립학교과 2원화 개편

본 제안서는 사립학교과 또는 현행 사학 전담부서를 다음과 같이 2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구분	책임자	주요 업무
행정분야	서기관급 교육행정직	법인, 재정, 시설, 정관, 인사절차, 감사 후속관리
교육분야	장학관급 교육전문직	교육과정, 학교장 리더십, 교육공동체 평가, 학교문화, 수업·진로진학 지원

8) <https://www.goe.go.kr/goe/cm/cntnts/cntntsView.do?cntntsId=995&mi=10063>

원 채용절차, 정관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교육분야는 사립학교의 교육적 성과와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지원하고 평가한다.

교육분야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립학교 학교장 임용·중임 교육성과 평가모형 개발
- 둘째, 사립학교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지원
- 셋째, 사립학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넷째, 사립학교 학교장 리더십 연수 운영
- 다섯째, 법인과 학교장 권한 분리 관련 교육
- 여섯째, 사립학교 교육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 일곱째, 학교장 인사 관련 교육전문직 의견서 작성
- 여덟째, 사립학교 교직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다

교육분야 책임자 장학관 임명 필요성

사학 문제는 법인 재산, 회계, 시설, 인사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다. 학교장 리더십과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학 담당부서에는 교육전문직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학관은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진로진학, 학교문화, 교원 전문성, 학교장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려면 행정직의 법령 검토와 장학관의 교육적 판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운영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전에 운영되었던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 분야 담당 장학관에 한하여 사학의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 장학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즉, 임기를 마치고 원적교 또는 공립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장학관을 말한다. 사학의 경험이 없다면 효율적인 교육분야 문제해결이나 컨설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장학관을 임명할 시는 별도의 절차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하게 선임해야 할 것이다.

라 사학지원 행정의 방향 전환

사학지원 행정은 다음과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 방향	개선 방향
♦ 사람법인 중심 관리 ♦ 서류 중심 점검 ♦ 사후 감사 ♦ 재정·시설 분리 지원 ♦ 이사회 의결 존중에 머물	♦ 학생중심 교육지원 ♦ 현장 중심 진단 ♦ 사전 예방과 컨설팅 ♦ 교육성과 연계 지원 ♦ 이사회 의결의 교육적 정당성 확보

마 사학 평가결과와 예산지원 연계 실시

현재 경기사학 중에서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국고재정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이다. 2022년 (전)사립학교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경기사학 전체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2.6%에 불과하다.⁹⁾ 즉, 절대다수의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교육적 헌신을 존중하여 학교장 및 교원의 인사권과 기본적 운영권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사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이므로 노후시설 개선, 안전시설 확충, 냉난방, 화장실, 급식시설, 과학실, 정보화 기자재 등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에 직결되는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법인 운영의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학의 민주성을 높이기 어렵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첫째, 학생 안전과 필수 교육시설 예산은 보장한다.**
둘째, 선택적·특별지원성 예산은 사학 공공성 평가와 연계한다.
셋째, 인사 투명성과 교육공동체 참여를 실천하는 사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교육청 권고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는 감점 또는 후순위 배정을 적용한다.
다섯째, 감점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수 안전예산이 아닌 선택사업 중심으로 적용한다.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연계할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평가영역	세부지표	평가방법
학교장 인사 투명성	임용·중임 심사기준 공개,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	정관, 회의록, 심사자료 확인
교육공동체 참여	학부모·교직원·학생 의견수렴 제도화	설문, 학교운영위원회 자료
법인 운영 공공성	이사회 회의록 관리, 이해충돌 방지	법인 자료, 감사결과
교원 인사 공정성	채용절차 준수, 위탁채용 협력	채용자료, 교육청 보고자료
교육성과	교육과정 다양화, 진로진학, 학생 지원	학교교육계획, 결과보고서
학교문화	민주적 의사소통, 민원처리, 교직원 신뢰도	만족도 조사, 컨설팅 결과
법령 준수	감사 지적, 시정명령 이행	감사결과, 이행보고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개선 지원과의 연계는 처벌이 아니라 개선 유도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1단계: 권고

학교장 임용·중임 표준절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정관 개정 권고

■ 2단계: 컨설팅

미이행 학교에 대해 교육청 사학 교육분야 담당자가 현장 컨설팅 실시

■ 3단계: 개선계획 제출

학교법인이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행계획 확정

■ 4단계: 평가 반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 교육환경개선 사업 평가에서 감점

■ 5단계: 인센티브

우수 이행 사학에는 교육환경개선 우선지원, 사학혁신 우수학교 표창, 교육과정 특색사업 지원

이 방식은 사립학교를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보다, 투명하고 교육중심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유인체계**이다.

[추가 제안 1]

사학 인사권의 합리적 운영장치 마련

가 정책 목표

사립학교 인사권의 합리적 운영은 사학 교육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사권이 학생중심 교육성과와 교육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교장 임용과 중임 심사의 공정성 확보.
- 둘째, 법인 중심 인사에서 교육성과 중심 인사로 전환.
- 셋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학교장 선임체계 구축.
- 넷째, 학교장 리더십을 통한 학생중심 교육경쟁력 강화.

나 사립학교장 임용 표준 절차 도입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장 임용을 위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법인에 권고해야 한다. 이 절차는 법인의 임명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명권이 교육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돕는 지원 장치이다.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 1단계: 학교장 결원 또는 임기만료 예정 사전 공지
- 2단계: 학교장 후보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공개
- 3단계: 내부형 공모 또는 공개추천 절차 운영**
- 4단계: 후보자 학교경영계획서 제출
- 5단계: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 6단계: 학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7단계: 이사회 최종 의결
- 8단계: 심사자료 및 의결사유 기록·보존
- 9단계: 교육청 보고 및 사후 컨설팅

이 중 핵심은 ‘3단계 내부형 공모 또는 공개추천 절차’와 ‘5단계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이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내부 인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외부의 유능한 교육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쇄적 승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다 중임 심사 의무화와 평가자료 반영

학교장 중임 심사는 단순한 이사회 의결이 아니라, **4년간의 학교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중임은 법인의 호의가 아니라 교육성과에 대한 검증 결과이어야 한다.

중임 심사 시 필수 자료는 다음과 같다.

평가영역	주요 내용	반영자료
학생중심 교육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진로진학, 기초학력, 학생 자치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 결과
학교 민주성	교직원 의사소통, 회의문화, 학교자치	교직원 설문,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학부모 신뢰도	학부모 소통, 민원 대응, 학교만족도	학부모 설문, 학교설명회 자료

평가영역	주요 내용	반영자료
교원 전문성 지원	수업개선, 교원학습공동체, 업무경감	교원평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자료
법령·윤리 준수	채용, 회계, 학사 운영의 적정성	감사결과, 민원처리 결과
미래교육 대응	고교학점제, 디지털교육, 진로융합교육	교육과정 혁신 자료

평가 비율은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평가 항목	반영 비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30%
학교경영계획 및 실적평가	30%
법령 준수 및 행정 신뢰도	20%
이사회 면접 및 건학이념 적합성	20%



이 방식은 이사회의 최종 임명권을 인정하되, 그 판단이 교육공동체의 평가와 교육성과 자료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장점 준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학생·학부모·교직원 참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¹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장을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요소는 충분히 준용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둘째, 학교경영계획서 공개와 설명회

셋째, 학부모와 교직원의 평가 참여

넷째, 학생 의견 반영

다섯째, 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여섯째, 심사자료 보존과 절차 공개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장 임용·중임 심사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배포해야 한다.

마

정관 개정 권고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정관 중 학교장 임용 및 중임 관련 조항에 다음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권고 예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예시 조항	권고안
1	“학교장을 임용하거나 중임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경영능력, 교육과정 운영 역량, 학생지도 역량, 교직원 소통 및 민주적 리더십, 학부모 신뢰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0)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참조

예시 조항	권고안
2	“학교장 중임 심사 시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학교장 임용 및 중임 심사자료는 심사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학교장 임용 또는 중임 여부를 의결할 때 주요 판단 근거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5	“학교법인은 학교장 임용 및 중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정관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이 공공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5

조직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

가

사학의 교육경쟁력 회복

사학의 경쟁력은 단순히 입시실적이나 시설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다.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학교장의 리더십, 학부모와의 신뢰, 학교문화의 안정성이 결합될 때 생긴다.

학교장 인사제도가 개선되면 사학은 건학이념과 학교 전통을 살리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학생자치, 지역연계 교육을 추진하려면 학교장의 교육적 전문성과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나

법인 운영의 공공성 제고

정관 개정, 심사자료 보존, 이사회 의결사유 기록,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면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진다. 이사회는 사학의 설립이념을 지키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정책 시행 후 이사회는 학교장 인사권을 행사할 때 교육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법인 전횡을 예방하고 학교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

교육청 사학지원 기능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과 또는 사학 전담부서가 행정분야와 교육분야로 2원화되면, 교육청은 사학을 단순히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행정직은 법인·재정·시설·인사절차를 관리하고, 장학관은 교육과정·학교문화·학교장 리더십·학생중심 교육성과를 지원한다. 이 구조는 사학정책의 균형성을 높인다.

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 회복

사학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이다. 채용비리, 인사전횡, 학사개입, 폐쇄적 학교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학교 신뢰를 훼손한다.

학교장 인사와 법인 운영이 투명해지면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운영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학생은 안정된 학교문화 속에서 학습과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다.

마

사학의 자율성과 민주성 균형 회복

본 제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학이 자율성을 교육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안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법인 내부의 폐쇄적 권한이 아니라,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자율성이어야 한다.

자율성과 민주성이 균형을 이룰 때 경기 사학은 지역교육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

7

결론

경기 사학은 위기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다. 사학은 지역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 축적한 교육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산이 학생중심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법인과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넘어, 투명하고 교육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학을 관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학이 학생중심 교육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과의 ‘행정·교육 2원화’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방안이자 조직개편안이 될 것이다.

사학의 행정규정준수의 관리감독과 함께 사학에서 수학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 학생중심 교육, 민주적 법인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중요한 교육청의 업무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교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지대한 우리나라 중등교육 상황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사립학교 학교장 인사지침 마련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능력있고 교육적 소신이 바로 서 있는 학교장이 법인과 이사회 내부 관계 때문에 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학교장 인사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학은 공립학교와 다른 고유한 강점을 살리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과 교육분야의 신설을 통한 ‘행정-교육 2원화’ 조직 개편은 꼭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의 성장, 학부모의 신뢰, 교원의 전문성, 학교의 공공성을 향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기사학의 미래이며, 학생중심 경기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